

## 2024학년도 동기 계절제 산학협력현장실습 교내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문

### □ 현장실습이란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 1항

### □ 현장실습 운영조건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 □ 제4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모집 개요

구분	내용
인정학점	· 표준 산학협력현장실습 및 자율 산학협력현장실습 일반선택
모집대상	· 본교 전 학년 재학생(편입생 및 <b>유학생</b> 포함, 4학년 2학기 제외)
제외대상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휴학생 등 ※ 정규교과목, 사회/해외/농촌 봉사활동 동시학점 이수 불가 ※ 학생 개인이 실습기업을 발굴하거나 공채 인턴 형태로 기업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제1항제1, 2호) ※ 실습기관과 학생의 전공이 무관한 현장실습(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모집인원	· 제한없음
실습형태	· 1일 8시간(전일제), <b>1개월 이상</b> 연속적으로 운영 ※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휴무일 수 만큼 실습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 실습을 반드시 수행(단, 월차휴가일은 실습일수로 인정됨) ※ (휴무예시) 법정공휴일/참정권행사일/예비군/대학행사 참여/사업장 전체 휴무일/병가/경조사 등
실습기간	· 2024.12.27.(금) ~ 2025. 2.28.(금) / 기간 내 1개월 또는 8주
실습지원비	· 표준형 : 학교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25%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월 최저임금의 <b>75%(약 158만원) 이상</b> · 자율형 : 학교 실습지원비 1개월 10만원, 8주 20만원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1개월 48만원 이상, 8주 96만원 이상**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이상일 경우에만 실습기관에 지급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매 4주마다 지급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별로 상이함

## □ 모집 유형

구분	내용
B 유형	<u>대학(센터)</u> 에서 실습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
D-1 유형	<u>학부(과)</u> 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생을 제안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
D-2 유형	<u>사업단</u> 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생을 제안하여 매칭하는 현장실습

## □ 모집 일정

B유형(일반유형)	D유형(학부(과)/사업단 유형)
· 실습기관 접수기간 : 11. 4.(월)~11.18.(월)	·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기간 : 11.29.(금)까지
· 실습생 모집기간 : 11.21.(목)~12. 4.(수)	· 모집현황 공문제출 : 12. 2.(월)까지
· 확정발표 : 12. 9.(금)	

※ 학부(과) 및 모집 현황 제출 : **12. 2.(월)까지 공문 제출(붙임 서식 활용)**

※ 위 기한까지 모집현황 공문 미제출 시, 산학협력현장실습 학점인정 불가

※ 모집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학부(과) 및 사업단 유형 모집절차

구분	일자	내용
실습기관 모집	11.29.(금)까지	· 학과 및 사업단 담당자는 모집된 실습기관에게 현장 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하기 계절제 산학협력 현장실습 수요조사 신청 안내 <b>※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 접수기간 내 신청</b> <b>※ 접수기간 이후 학과/사업단에서 모집한 기관이 현장 실습지원센터와 중복될 경우 신청 불가</b>
실습생 모집		· 모집된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동기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안내, <u>모집현황 제출 전 학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완료</u> <b>※ 실습기관/실습생 현장실습 매뉴얼 참조</b>
실습기업-실습생 모집현황 제출	12. 2.(월)까지	· 모집현황 제출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매칭 <b>※ 매칭 이후 학생은 실습기관 정보 확인 가능</b> (학생에게 협약서, 수업계획서, 기업정보 확인 안내 요망)
지원신청서 제출	12.19.(목) 16시까지	· 선발 완료 후 (예비)실습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출력, 지도교수 승인(서명)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
사전교육	12.12.(목), 12.17.(화)	· 사전교육 실시
방문점검	실습기간 내	· 학부(과) 및 사업단에서는 실습기간 내 최소 1회 실습기관 방문점검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함 <b>※ 방문점검 양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배포(양식 변경 불가)</b>
방문점검 보고서	25. 2.14.(금)까지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a href="mailto:fieldwork@jbnub.ac.kr">fieldwork@jbnub.ac.kr</a> )로 제출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25. 3월 말	·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점인정 및 학교 실습지원비 지급 <b>※ 큰사람포인트 일괄처리(1개월 30점, 8주 40점)</b> · (사업단) 실습생에게 학교 실습지원비 지급

**※ 사업단에서는 학교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표준형 월 기준 최저임금의 25%(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이상일 경우에만 실습기관에 지급)**

**※ 학부(과) 및 사업단에서는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요건 및 실습생 지원사항(실습지원비, 통근버스, 기숙사, 중식비 등) 정확히 확인 후 진행**

## □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시 주의사항

○ 실습기관 모집(붙임.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참조)

- 실습기관 1개사 당 실습생 3명 이내 매칭 권장(※공공기관 제외)

※ 규모가 작은 실습기관에 실습생을 다수 매칭할 경우, 민원발생률 높음

○ 실습지원비

구분	자율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
기관 실습지원비	1개월 48만원 이상 / 8주 96만원 이상*	월 기준 최저임금의 75% (약 155만원) 이상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매 4주마다 지급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협조요청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 예외사항으로 학과(D-1)유형 중 학교기업(전북동물의료센터) 매 4주마다 10만원 이상

- 실습기관-실습생 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가능

※ 단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실습기관은 수요조사 신청 시, 수업계획서 내용에 의거하여 요구 사항(전공, 학과 등)을 상세하게 입력(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작성)

○ 실습생 모집(붙임. 실습생 모집 안내문 참조)

- 모집대상 : 본교 전 학년 재학생(편입생 및 유학생 포함, 4학년 2학기 제외)

- 제외대상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휴학생 등

※ 정규교과목 등 동시학점 이수 불가능

- 인정학점 : 산학협력현장실습 교과목 / 일반선택 1개월 3학점, 8주 6학점

- 실습지원비 : 학교 실습지원비 자율형 4주 10만원, 8주 20만원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표준형 월 158만원 이상,  
자율형 1개월 48만원 이상, 8주 96만원 이상

※ 표준형 학교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 이상일 경우 실습기관에게 지급(학생에게 지급하는 별도 학교 실습지원비 없음)

※ 예외사항으로 학과(D-1)유형 중 학교기업(전북동물의료센터) 매 4주마다 10만원 이상

※ 학교(학과/사업단)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을 실습생에게 사전 안내 필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지원비 지급일과 다를 수 있음)

- 실습기관 수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전공자(학생)는 선발 및 실습진행 불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발굴하거나 공채 인턴 형태로 기업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현장실습 참여 불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제1, 2호)
- B(기본)유형에서 D(학과, 사업단)유형으로 사후 전환 지양  
※ D유형의 경우 방문점검 및 실습기관, 실습생 관리는 해당 학과 및 사업단에서 진행

## □ 유학생 현장실습 모집

- 법무부 법령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으로만 진행 가능
  - \* 월 기준 최저임금의 75% (약 158만원) 이상
  - ※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기회 부여
- 유학생 현장실습 희망 실습기업(관)에 한하여 실습생 신청 가능
- 그 외 모집 및 제외대상 등 기존 산학협력현장실습과 동일

## □ 유학생 현장실습 관련 안내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2023. 6.23.(금)>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중략)

□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하여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합니다.

(중략)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중략)

- 이번 개선을 통해 표준형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업(관)은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실습생으로 활용 가능

## □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위 해석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2018. 9.11.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범위)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단,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
- (가입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게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일반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
  -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30만원일 경우, 30만원×업종별 보험료율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가 무급일 경우, 0원×업종별 보험료율
- (신고·납부 미이행시 적용·제재)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 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됨
- (보상범위·수준)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
  -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 (산재발생 시 사업주 배상범위)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됨

## □ 학부(과) 및 사업단 방문점검 안내

- 학부(과) 및 사업단 현장실습 지도교수 및 담당자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교육내용, 실습환경, 근태상황, 애로사항 점검 등)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 제7항
- 방문점검 보고서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 양식 변경 불가
  - ※ 제출기한 : 2025. 2.14.(금)까지 / 이메일 송부(fieldwork@jbnu.ac.kr)

## □ 학부(과) 및 사업단별(조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용 안내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조교 가입
  - ※ 내용 : 신청기업 및 실습생 확인, 실습기관-실습생 매칭정보, 협약서, 지도사원 보기 등

## □ 산학협력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실습 전 3자 협약까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며, 실습 중/후에는 현장실습 일지(책자)를 통해 운영됨



## □ 기타사항

- (예비)실습생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시, **현장실습 실습일지**(현장실습 제반서류/출석부, 보고서, 평가표, 만족도 조사 등을 하나로 모은 책자) 배포
- 큰사람포인트(1개월 30점, 8주 40점) 적립
  - ※ 실습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습생 큰사람포인트는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입력**
- 산학협력현장실습 졸업자격으로 인정(모험활동 분야, 15주 이상)
- 실습 중 실습기관-실습생 민원은 1차적으로 학부(과) 및 사업단에서 확인 후 조치, 현장실습 요건 및 학점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 실습기간 내 실습생 상해보험(학교) 및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
  - ※ 산재보험 관련 내용은 실습기관 모집안내문 참조
- 학과/사업단에서는 모집된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요건 및 실습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내

## □ 문의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건물위치 : JBNU 인터네셔널센터(1-33건물) 303호 현장실습지원센터
- 전화/팩스 : 063) 219-5328~9